

[무배당 AXA암보험(재가입용)2506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질병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AXA암보험(재가입용)2506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대상

(1)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약관	암진단금(간편심사)(재가입용)	10년	전기납	50세~90세	월납 연납
		1년~9년		(100-보험기간)세	
특별약관	암사망(간편심사)(재가입용)	10년		50세~70세	
		1년~9년		(80-보험기간)세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재가입용)	10년		50세~90세	
		1년~9년		(100-보험기간)세	
제도성 특별약관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보장제한부 인수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만기 재가입 장애인전용보험전환	-	-	-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2) 만기 재가입의 경우 재가입전 소멸된 보장은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며, 잔여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간 만큼 보험기간 적용함

(2) 가입대상

가. 만기재가입 특별약관에 따라 재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장기보험)을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음.

나. 각 담보별 최초계약의 가입나이(관련 규정 확인용)

구분		최초 가입나이
보통약관	암진단금(간편심사)	40세~80세
특별약관	암사망(간편심사)	40세~70세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40세~80세

다. 각 담보별 최초계약의 면책 및 감액기간

최초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

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음.

담보명		최초 보험가입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암진단금 (간편심사)	암	90일	O (1년)
	기타피부암	X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암사망 (간편심사)	암	90일	O (1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X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90일	O (1년)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우량제 할인

재가입전 계약에서 우량제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재가입계약 초회 보험료부터 할인 대상 담보의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우량제 할인 예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서(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 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기초로 작성한 우량제 할인 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제출일 직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제출하여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회부터 할인 대상 담보의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가. 고혈압이 없는 경우

- 고혈압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나. 당뇨병이 없는 경우

- 당뇨병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경우

(2) '7.(1)'에 따른 우량제 할인은 기본계약인 '암진단금(간편심사)(재가입용)'과 특별약관 중 '암사망(간편심사)(재가입용)',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재가입용)'에 한하여 적용함.(이하 '간편심사 할인 대상 약관'이라 함)

8. 갱신탁약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나.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7. 만기재가입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봄

(2) 회사는 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재가입 조건을 안내하며, 계약자가 재가입 시점에서 아래 재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재가입 직전계약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이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음.

가. 피보험자 연령이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나.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 되었을 것

다. 재가입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3) 계약자는 「(2)」의 재가입 직전계약 외 회사의 재가입용 판매상품에 추가된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을 거절 할 수 있음. 또한, 계약자는 추가된 담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제외한 재가입 안내만을 받을 수 있음.

(4) 「(2)」의 「재가입 직전계약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이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재가입한 경우 아래에 정한 사항을 따름.

가. 재가입되는 계약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및 보험료 등을 개정된 경우에는 재가입일 현재의 제도 및 보험료 등을 적용

함.

- 나. 재가입전 계약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담보의 가입은 불가함.

18. 기타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운용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함
 - 가.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 나. 질병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 다.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일 것
- (2)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3)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4) 판매채널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①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 ② 적용범위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 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